

민법(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

▣ 일시 : 2005. 2월 21(월) 10:00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306호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

▣ 일시 : 2005. 2월 21(월) 10:00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306호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목 차

□ 주 제	1
□ 공청회 진술인	2
□ 진행순서	3
□ 진술요지서	
○ 김현웅(법무부)	5
○ 강일원(대법원)	19
○ 최용근(대한변호사협회)	27
○ 정환담(성균관)	35
○ 구상진(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55
○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67
○ 광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73
○ 나영정(시민사회단체)	83

□ 주 제

-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 및 대법원이 제출한 신분공시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신분공시의 방향 검토

□ 공청회 진술인

추천기관	진술인	직책	비고
법무부	김현웅 (金賢雄)	법무부 법무심의관	
대법원	강일원 (姜日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한변호사협회	최용근 (崔龍根)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성균관	정환담 (鄭煥淡)	전남대학교 법학과교수	
정통가족제도수호범 국민연합	구상진 (具相鎭)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 민연합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南仁順)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郭培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시민사회단체	나영정 (羅煥晶)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 진술인의 순서는 진술내용 및 견해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진행순서

시간	내용
10:00	개회
10:00~10:10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10:10~11:40	진술인 발표
11:40~13:00	질의·답변
13:00	산회

1. 서

인제 조국 건설을 위한 국민총투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신민당을 비롯하여 공천위원, 국회의원, 국회 정책자문위원회와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자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현용 (법무장부)

법무부가 제16대 국회의 1차, 2차 법제사범위원회와 조국건설위원회를 내세우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총투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신민당을 비롯하여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자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조국의 발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인부실적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외국인분류제도의 연구 및 '가족별개정특검위원회'의 조직을 통하여 조국의 발전을 위한 인부실적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주요 대안으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 1지계', 부부의 귀속관계를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제'가 논의되었는데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검토하기 위해 2004. 12. 27. 국회 법제사범위원회에서 조국건설위원회를 내세우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총투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신민당을 비롯하여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자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법무부는 05. 1. 10. 대법원,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및 실무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제도 개선 위원회」를 발족하여 조국건설위원회를 내세우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총투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신민당을 비롯하여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자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가족별개정특검위원회의 의의를 참조(법무부 2003. 12)
2)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고 본인의 신분변동사항 일제히 공시, 가족사상으로 인부실적, 조국의 발전, 조국의 인력사상 공시, 목적별 증명장식 도입

공
(관) [민
관] [민
(관)]

1. 서

먼저 호주제폐지 후의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공청회를 마련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가 제16대 국회에 이어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호주제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호적을 대신할 국민 신분등록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호적 관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외국신분등록제도의 연구 및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¹⁾의 논의를 통하여 호적을 대체할 신분등록제도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주요 대안으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 1적제', 부부와 미혼자녀를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제'가 논의되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오던 중, 2004. 12. 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폐지에 대비한 '호적' 대안에 대한 정부안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행 호적감독기관인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제'²⁾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05. 1. 10. 대법원,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및 실무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제도 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고, 대법원 제시안을 포함하여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1)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참조(법무부, 2003. 12.)

2)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고 본인의 신분변동사항 일체를 공시, 가족사항으로 배우자, 본인의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 공시, 목적별 증명방식 도입

법무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형태입니다. 이는 1인1적제와 가족부제의 장점을 종합하고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양성평등의 헌법이념과 민법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은 물론,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법제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 주무부처의 실무 책임자로서, 금일 공청회가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장이 됨과 동시에 부족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향후 법제정 과정에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금번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I.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개요

1. 기본 원칙

법무부가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고려한 기본 원칙은 첫째 국민 신분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에 적합한지, 둘째 사용 목적에 따른 충분한 공시·공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셋째 기존 호적자료 활용 및 향후 신분등록자료 관리의 효율성 여부 등입니다. 또한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취지 및 국민정서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2. 신분등록원부 편제방식(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1) 편제단위 : 개인별 편제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개인별로 편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원부를 구비하는 것으로 현행 호적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행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민법상 '家'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여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적부에 家 구성원들

의 각종 신분변동사항을 함께 등재·공시하여 왔으나,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구비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신분등록부의 편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주요대안으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제'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1적제' 편제방안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가족부제는 호적제도와 편제방식이 유사하여 개편작업이 용의하고 신분관계의 신속한 파악에 있어 개인별 편제방안보다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가족'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함에 따라 기준인 선정·변경 문제, 입양, 혼인 등의 사유로 소속 가족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의 이적·이기문제 및 이에 따른 복잡한 업무처리 문제가 현행 호적과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별 편제방안은 가족별 편제와 달리 기준인 선정·변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호주제폐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를 거치는 현행 호적제도가 개선되며 호적 전산화에 따른 신분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색기준인 호적상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 문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 등이 있고 또한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것은 '가족해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어 왔습니다.

「신분등록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두가지 편제방식에 장·단점을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제는 개인별 편제양식을 취하되,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가족단위 편제의 장점을 반영하는 방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추구하는 기본원칙 및 이념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현재 호적정보가 전산화³⁾되어 있어 편제방식이라는 부분은 신분등록원부를 어떠한 형태로 공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현재 호적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신분등록원부를 편제함에 있어서는 '家'를 단위 보다는 '개인별' 편제방식이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취지 및 개인의 존엄이라는 헌법이념의 구현에 바람직함은 물론 호적 전산화에 따른 관리측면과 출력제한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인별 편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의 전제로 논의되어왔던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 정확성 문제는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거쳐 개인별 편제방식의 채택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 편제를 구비하는데서 오는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문제는 현재 전산화된 호적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원부를 편제하고 기존 호적 전산정보 자료는 당분간 유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재·공시사항 : 가족사항과 신분사항

신분등록원부의 기재·공시사항은 크게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원부의 기재·공시방안은 뒤쪽에 편철된 신분등록원부의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족사항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및 사망 여부(배우자 제외)가 기재·공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사항 즉,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이 기재됩니다.

신분등록원부에 어떠한 사항을 기재·공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3) 2002. 11. 호적전산화가 완료되어 수기방식에 의한 종이호적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고 입력된 정보는 법원행정처내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제적부의 전산화가 진행중임

서는 신분등록부의 사용목적 및 현재 호적부 공시범위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법상 호적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총 269개로 각 법률규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호적은 주로 ①상속관계 증명, 즉 상속으로 인한 각종 권리·의무에 있어 상속자 확인, ②보험·연금·보상 등 수급자 확인을 위한 증명, ③각종 신고·신청, 시험응시시 신원확인, ④제척, 기피, 면책사유로서의 친족관계 증명 등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분등록부는 중혼여부, 근친혼 등 혼인성립요건이나 입양의 성립요건, 부양의무자 확인, 법정상속인 확정 등 민법을 비롯하여 각 개별법이 정하는 목적에 따른 친족관계 증명 및 본인 확인 증명에 그 존재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공시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원부의 가족사항 공시범위는 이러한 신분등록부의 사용목적에 비추어 적정범위의 가족관계가 공시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 공시 및 형제자매 인적사항과 사망여부에 대한 공시로 가족사항이 지나치게 많이 공시되는 것아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를 공시하기로 한 것은 현재 호적의 공시범위⁴⁾와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실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수당, 세금 공제 등 배우자의 부모사항, 특히 사망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 국민 편의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를 기재토록 한 부분 역시 기본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특히 상속관계의 간편한 확인 등 국민 편의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이

4) 호적은 호주와 가족(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에 입적한 자)의 인적사항과 신분변동사항이 호적부에 공시됨.(일반적인 경우 호주, 배우자, 장남 및 미혼자녀, 장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인적사항과 신분변동사항, 호주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의 이름과 전호적이 공시됨)

혼이 증가하고, 성변경, 친양자 제도 도입 등으로 형제자매가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한 형제관계 확인 및 이를 통한 근친혼 예방을 위하여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공시부분은 향후 정보구축이 완료된 후에 가능할 것이며 특히 형제자매 인적사항까지 공시된 신분등록원부는 그 발급대상을 본인, 국가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입증 목적에 반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철저히 방지할 예정입니다.

결국 신분등록부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인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가족들의 인적사항과 생존여부가 기재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본적 유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하에서 본적은 각종 신분변동기록(신고서 등)의 관리지 및 검색기준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⁵⁾ 본적은 원칙적으로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의 신분변동 관련기록(혼인, 출생, 이혼, 신고서류 등)을 함께 보관·관리하며 현행 제적부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신분기록상 오류를 방지하고, 수형사무, 파산선고 등 관련 업무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적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부가 본적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있어 부부의 미혼의 자녀는 부(父)의 본적에 따르며⁶⁾, 이혼시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5) 현행 호적법상 본적은 '호적부'의 소재지로 볼 수 있음

6) 이는 민법개정안의 자녀의 성(姓)과 본(本) 결정방식을 따른 것임

호적이 전산화 되어 있고 개인별 편제방식을 채택하면서 본적의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적은 국민들에게 출신지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점, 호적의 전산화로 더 이상 신고서에 따른 신고사항 입력을 본적지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점을 이유로 본적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적의 전산화는 이루어져 있으나, 제적부는 종이상태로 본적지에 보관되어 있어 당분간 신분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제적부와의 연계가 필요한 점, 각종 신분변동 신고서류 즉, 출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류의 보관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신분변동관련 서류는 대부분 배우자, 자녀, 부모의 신분변동사항과 연계된 것이므로 부부와 미혼자녀 신분변동 신고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신분변동사항의 오류를 시정, 확인함에 있어 효율적인 점, 본적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신분변동사항 입력 및 신고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경우는 인구편중 지역의 관리, 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재배치가 불가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적을 유지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적을 없앨 경우 현행 본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형사무 및 파산선고자 관리 등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고, 신분등록부의 관리상 검색기준으로 본적을 사용할 경우 검색의 정확성과 편의성에 있어 도움이 되는 등의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부와 미혼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하는 것이 호주제폐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적은 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은 여러 행정목적적 이유로 신분변동기록의 관리지 및 검색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어떠한 실체적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본적지 선정도 부부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본적을 유지토록 하여 호

주제폐지나 양성평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시 출력제한을 통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본적의 외부공시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3. 증명방식

그동안 호적은 호주와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전부 기재된 호적등본의 형태와 호주와 신청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 호적초본의 형태로만 발급되고 있어, 증명이 필요한 사항과 무관한 개인 신상정보가 과다하게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호적등·초본의 열람, 발급 거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청구사유만 소명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어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하에서의 신분등록원부는 발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력제한을 통해 증명방식을 다양화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력제한의 구체적 범위 및 방식에 대하여는 법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또한 현행 호적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 규정을 심층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7) 호적법 제12조(호적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 등)①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호주 및 그 가족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③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4. 소요기간 및 필요예산

현재 호적전산정보시스템을 관리·유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완비를 위하여는 신분등록제도안의 확정 후 최소 약 2년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원부의 확정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약 3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제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법개정안과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는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민법개정안 통과후 2년으로 되어있는 민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II. 개선 효과

1. 양성평등 원칙과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되는 합리적인 신분등록제 마련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공시되는 형태로서 남성 호주중심으로 편제되고 공시되던 '호적'과 달리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추상적인 '家'가 아닌 현실상에 부합한 가족관계를 기록·관리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목적별 증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실현

호적정보 전산화로 "DB 구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증명 목적에 따른 제한된 출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정보가 과다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의 신분정보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관리 효율성 증대

개인별로 기록을 관리함에 따라 현재 '家'를 전제로 한 분가·폐가·복적 등 관련예규 230여개가 폐지되는 등 신분등록업무 처리가 간편해지고, 전산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V. 향후 계획

금번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하여 법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대법원, 관계부처, 학계,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05. 상반기까지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호적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규정을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법무부(안)에 따른 신분등록원부 양식

신분등록원부						
본 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1234		구 호적		호주 김일남 410201-1555555 본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
기본 가족사항						
부			모			
성명	김일남		성명	이일녀	사망	
주민등록번호	410201-1555555		주민등록번호	380301-2333333		
본 인	성명	김본인 (金本人)	주민등록번호	650101-1234567	성별	남
			생년월일	1965/01/01	본 (本)	金海
부			모			
성명	박장남		성명	최일자	사망	
주민등록번호	400707-1222222		주민등록번호	420606-2444444		
배 우 자	성명	박여인 (朴女人)	주민등록번호	680202-2345678	성별	여
			생년월일	1968/02/02	본 (本)	朴陽
자 녀	성명	김일순	성별	여	생년월일	1990/01/01
		주민등록번호	900101-2777777			
	성명	김순희	성별	여	생년월일	1991/11/11
		주민등록번호	911111-2888888			
	성명	정이군	성별	남	생년월일	1993/11/20
		주민등록번호	931120-1234656			
사망 여부						

영제자매

영제자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망 여부
	김일화	여	1962/12/01	621212-2234567	사망
	김이원	남	1964/03/03	640303-1234568	
	김오남	남	1968/04/04	680404-1345678	

신분사항

일사	구분	상세내용	신고지

혼사	구분	상세내용	신고지			
				혼인	[혼인신고일] 1965년 01월 03일 [배우자] 정여인(681111-21233411)	서울 - 중구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1967년 04월 04일 [배우자] 정여인	서울 - 중구

입사	구분	상세내용	신고지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안)

강 일 원
(대 호 법 원)

검토경위

- 호주제 폐지 논의에 따라 호주제 폐지는 2003년 하반기 신분등록제도 변경에 대비한 정보화전략 수립으로 추진
- 2003년 12월 삼성SDS로부터 신분등록제도 현행에 걸맞은 정보화전략안 용역보고서 제출받아 심층 검토
- 2004년 상반기 그 동안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호주제도의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개인별 편제방안,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 등의 강점을 취한 새로운 방안 마련
- 200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방안을 기초로 한 명분과 대법원규칙 및 조례제정 등 정비작업 중
- 대법원 산하 호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새로운 신분공시방안과 이를 기초로 한 법률제정안 등 검토
- 2004년 12월 국회 입법자문위원의 소위원회에서 민법 개정과 따른 호주제 폐지에 대해 입법원과 법무부의 새로운 신분공시제도 검토의견 제출 요구
- 2005년 1월 입법자문위원의 심의를 주관하던 소위원회에서 대법원의 호주제 폐지 요구
- 2005. 1. 10. 내정원의 새로운 신분공시방안 발표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안)

■ 검토경위

- 호주제 폐지 논의에 따라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대법원은 2003년 하반기 신분등록제도 변경에 대비한 정보화전략 수립사업 실시
 - 2003년 12월 삼성SDS로부터 신분등록제도 변경에 대비한 정보화전략방안 용역보고서 제출받아 심층 검토
- 2004년 상반기 그 동안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호적제도의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개인별 편제방안,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 등의 장점을 취합한 새로운 방안 마련
- 200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방안을 기초로 한 법률과 대법원규칙 및 호적예규 등 정비작업 준비
 - 대법원 산하 호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새로운 신분공시방안과 이를 기초로 한 법률제정안 등 검토
- 200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법 개정에 따른 호주제 폐지에 대비하여 대법원과 법무부의 새로운 신분공시제도 검토의견 제출 요구
 - 2005년 1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대법원의 안 발표 요구
- 2005. 1. 10. 대법원의 새로운 신분공시방안 발표

- 1인1적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와 자녀가 포함된 가족부의 성격을 가지며, 공시방법을 제한하여 목적별 공부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2005. 1. 10.부터 1. 20.까지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참여
-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 단일안 마련

■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안)

○ 기본원칙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
-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공시

○ 그 동안 논의된 신분등록 편제방안 비교 검토

	내 용	장 점	단 점
개인별 편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1개의 신분등록부 편성 ▪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 포함하되, 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이념과 호주제 폐지의 입법취지에 부합 ◦ 정보 보호 우수 ◦ 신분정보의 효율적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전체의 신분정보 파악에 일부 불편 • 정보 보호가 목적별 편제방안에 비해 미흡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중 1인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가(家) 단위로 신분등록부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가족 전체에 대한 신분정보 파악 용이 ◦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국민정서에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정보의 과다 노출 • 결손가정 등 차별의 우려 있는 정보 공시 • 기준인의 선정 및 변경이 문제와 분가·폐가·복적 등 복잡한 업무처리
목적별 편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등 목적별로 별도의 등록부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정보보호에 가장 충실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파악 곤란하여 거래관계에 불편 초래 •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주민등록 1원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정보와 신분등록정보를 통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의 효율성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과 신분등록은 그 목적과 편제 원리가 상이함 • 정보의 과다 노출 우려 • 관장기관과 근거 법령 통폐합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 새로운 신분공시방안 개요

- 1인1적을 원칙으로 함
- 배우자와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부의 형태로 편제
- 목적별 공부식 증명방법 도입

○ 구체적 내용

- 현재 호적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산상으로는 본인과 직계가족은 물론 인척의 정보까지 완벽하게 연결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를 어떤 형태로 공시할 것인지 여부만 문제될 뿐임
-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1개의 신분등록부 편제 : 양식안 별첨
- 본인 이외에 배우자,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신분정보 공시
 - 형제자매의 신분정보도 함께 관리하되, 이미 제적된 형제자매의 경우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가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고, 추후 정보 구축이 완료된 뒤 법령에 의하여 공시 여부 결정
- 본인의 모든 신분변동사유를 신분사항란에 항목별로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
 - 다른 가족의 신분변동사유는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함께 기록하지 아니하되, 자녀에 대하여는 사망 여부를 표시하여 상속관계 확인을 쉽게 함
 - 부모의 사망 여부를 표시하는 경우 결손가정이 공시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음
- 공시의 제한
 - 원칙적으로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적별 공부형태로 신분등록증명부를 발급하여 필요한 정보만 제3자에게 공개

- 신분등록부 등본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

- 법무부안과의 차이점 : 신분등록부 편제 및 공시의 원칙과 방법은 동일함

공시사항	대법원	법무부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 표시	X	○
배우자 부모의 공시방법	성명만 표시	주민등록번호도 표시

○ 평가

- 전산화의 효과로 개인별, 기본가족별, 목적별 편제방안의 장점만을 취함
- 헌법이념과 민법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
-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동시에 효율적 공시
-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 반영
- 유럽 선진국의 신분공시제도를 전산화를 통하여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제도

■ 법률 규정 사항

○ 신분등록부의 명칭

○ 신분등록부의 편제방법

○ 신분등록부의 증명방식

- 목적별 공부 형태
- 등·초본 또는 전부·일부증명

○ 본적 관련 문제

*인법개정
193 개정의 목적*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사업 내용

-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 대법원(안)에 따라 개인 신분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기존 호적과는 편제 원칙이 다르므로 전체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성 요소를 재구성한 새로운 신분등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기존 호적정보시스템은 제적정보로 전환하여 제적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 *계획*

- *본키워드* 미기재 및 불실 주민등록번호 정비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어느 편제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정비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대법원(안)의 경우 주민번호의 중요성이 보다 높음(성명, 본적과 함께 중요한 검색 기능을 수행). 2003. 6.부터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진행중임
- 한편 중복본(本)코드 정비사업은 2003. 6. 시작하여 2003. 9. 정비를 완료하였음

○ 소요 예상기간·비용 및 연도별 실행계획

- 신분등록방안 확정 후 약 2년 6개월, 약 3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
- 구체적 연도별 실행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BPR/ISP 수립										
장비도입										
기초자료 구축시스템개발										
자료정비시스템 개발										
정정사건 분류작업										
신분등록제 정보시스템개발										

인법중 개정 법률안 관련
신분공시 안에 대한 의견서

1. 취지 (신분제도의 기본 원칙)

최응근
(대한변호사협회)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내의 차별적인 태도를 조지은 가정에서 남성이 부담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의 호적에서는 남성의 존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어 남성은 어디에 존재 없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여성은 전가의 호적에서 사라지고, 남성의 호적으로 옮겨져 부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더욱이 이혼과 재혼 가정의 개인 신분 정보가 남남이 기록에 공개가 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크게 상처를 입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호적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바 새 신분등록제도는 어떤 현실적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헌법이념인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개인의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기준을 함과 동시에 개인의 신분정보의 보호라는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가족 질서와 가족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불가분의 역할을 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본인은 기본적으로 현행

드 응 초

(호주인호법안)

민법중 개정 법률안 관련 신분공시 안에 대한 의견서

1. 처음에 (신분제도의 기본 원칙)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나열한 우리 현행 호적은 가정에서 남성이 우월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기존의 호적에서는 나이든 어머니가 호주인 어린 아들의 보호를 받는 신분임을 드러내고, 호주인 남편은 아내의 동의 없이 혼외자식을 얼마든지 입적시켜왔습니다.

결혼과 함께 여성은 친가의 호적에서 사라지고, 남편의 호적으로 옮기며 본적까지 고쳐야했습니다. 더욱이 이혼과 재혼 가정의 개인 신분 정보가 낱알이 기록돼 공개가 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크게 상처를 입는 불합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호적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새 신분등록제도는 이런 현실적 모순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헌법이념인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개인의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기능을 함과 동시에 개인의 신분정보의 보호라는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가족 질서와 가족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순기능적 역할을 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본인은 기본적으로 현행

호주제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신하여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2. 신분등록부의 명칭에 대하여

기존의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등록제를 시행 할 경우 신분등록원부의 형태는, 부부의 일방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가족별로 하나의 신분 등록부를 편제하여 그 등록부내에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며,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2세대 동적)인 <가족부제>와 각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되, 가족사항으로서 부모·자녀·배우자에 한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만 기재(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 하지 않음)하는 방식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두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바(그 외에 혼합형, 목적별 공부도 있음),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신분공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신분정보뿐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칭은 가족(신분)등록부 또는 신분등록부라고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 편제방식 및 공시의 범위에 대하여

가. (혼합형) 1인 1적제에 대하여

2005. 1. 25자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안)에 의하면 (편의상 1인1적부라 합니다.) 1인1적을 원칙으로 하고, 배우자와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부의 형태로 편제를 하고 목적별 공부식 증명방법

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모든 개인에 대하여 1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제하고 ②본인이외에 배우자,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신분 정보를 공시하되, 형제자매의 신분정보는 현 단계에서 공시하지 아니하고 ③본인의 모든 신분변동사유를 신분사항 란에 항목별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하되 자녀의 사망여부는 기재하지만 부모의 사망여부의 기재는 하지 않고 ④ 배우자의 부모는 성명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첫째 형제자매를 공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상속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고 가족전체의 신분정보파악에 불편하며 둘째는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역할이 국민의 신분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 사용 목적에 따른 충분한 공시·공증기능 유지, 기존 호적자료 활용 및 향후 신분등록자료 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위 (혼합형)1인1적제는 좀더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나.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안)에 대하여

법무부가 마련한 편제방식은, 본인을 기본으로 편제한 가족기록부의 형태로서, ① 본인의 신분변동사항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기재와 ②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사망여부를 기재하되 다만, 형제자매는 기존 호적 보다 공시범위를 넓히는 사항이므로 자료정비 완료시까지 공시유보 하고 각종 신분변동기록 관리지 및 검색 기준 개념으로서 본적을 유지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하고 본적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고 다만, 미혼의 자녀는 부(父)의 본적에 따르는 (이혼 시 미혼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에 따름) 편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제를 근간으로 하되 형제자매의 기재와 본적 유지 등 공시범위를 확장하여, 가족신분기록의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국민 정서를 반영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소결론

호주를 기준으로 한 家단위 편제에서 개인별 편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가족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의 호적에 묶여있던 가족이 개인별로 나뉘진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주의를 해체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단위 신분등록부가 시행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개인주의적 성향과 함께 이혼을 더욱 쉽게 하여 가족공동체를 해체하는 경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의 정서적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는 전산화기술의 발전으로 기재가 충분히 가능한 형제자매의 신분정보 및 본적지기재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신분정보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의 추가 기재는 우리 정서상이나 실제 필요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부는 각 개인의 신분정보 및 일정한 범위내의 가족(배우자와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등)의 신분정보를 충분히 기재하되 다만 개인 신분정보의 출력에는 엄격한 제한을 하여 목적별 증명 발급제를 병행 시행하는 등 개인 정보에 대하여 출력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정보 보호를 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신분정보의 입력은 그 제한을 완화하고 출력은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4. 맺는말

새 신분등록제 시행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과제이므로 종래 호주제에 바탕을 둔 호적부를 폐지하고 우리 헌법상 최고의 이념인 개인의 인격의 존엄한 가치와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 신분등록제의 시행은 진일보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민법중 개정 법률안 관련

신분공시 안에 대한 의견서

거 2005. 2. 3. 현재의 호주제 불합치 결정과 신분등록제와의
관련성

정 환 답

1. 재판에 대한 기본적 문제 (성균관)

1. (2001. 원가910 10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함)에 대해 후 법원선고에
관한 호주의 신청기록에 의한 위헌법을 심판제정신청.

(1) 2001. 원가910 이 사건은 전 부가 호주인 가에 관계되어 있던 자에
대하여 이혼 후 그 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자가 자를 그와 가의
입적(이적)하고자 관한 호적 관청에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호주의 신청이 없
으므로 호적관청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와 제781조
제1항 본문(가외 입적, 성과 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정
신청을 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자의 부가 입적)
에 대한 심정만을 받아들여 위헌법을 심판을 제정할 사안이다.

이 사안을 심판 전에, 당해 사건 신청인들의 자에 대한 입적신고가 거
부된 것은 호적법 제114조 제1항 "제적하려는 때에는 신의자를 신고서에 거
제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헌
이 호주의 정고 불행조도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호주제도의 위헌성 때문
에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신청인의 또는 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하는 그 자를 모 본인의 호적에 편입시키고자 할 것이며, 호적을 해체해
서 단독호적제도로 개편하기를 바라는 소의 취지도 아니며, 또한 호적관청만
이루어졌다면, 호주제의 위헌성을 논의하고자 할 것도 아니다. 당국에서는

법 른 른
(법 른 른)

민법중 개정 법률안 관련 신분공시 안에 대한 의견서

가. 2005. 2. 3.현재의 호주제불합치결정과 신분등록제와의 관련성

I. 사건에 대한 기본적 분석

1. (2001.헌가.9 10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 모의 자 입적신고에
관한 호주의 신청거부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1) 2001. 헌가.9.10 이 사건은 전 부가 호주인 가에 편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혼 후 그 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모가 자를 그의 가에
입적(이적)하고자 관할 호적 관청에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호주의 신청이 없
으므로 호적관청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와 제781조
제1항 본문(자의 입적, 성과 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자의 부가 입적)
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안이다.

이 사안을 살피 건데, 당해 사건 신청인들의 자에 대한 입적신고가 거
부된 것은 호적법 제114조 제1항 “전적하려는 때에는 신고서를 신고서에 기
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하
여 호주의 신고 불협조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호주제도의 위헌성 때문
에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신청인인 모는 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하는 그 자를 모 본인의 호적에 전적시키고자 한 것이며, 호적을 해체해
서 단독호적제도로 개편하기를 바라는 소의 취지도 아니며, 또한 호적전적만
이루어졌다면, 호주제의 위헌성을 논의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당국에서는

호적법 제정 후(1960.1.1) 호적법을 12차례나 개정한바 있으며, 호적법 제114조 전적신고에 관해서도 4차례나 개정을 한바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의 합의이혼에 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은바 있는 모에 의한 자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적신고에 관한 호적절차는 당국에서 호주가 아닌 양육권을 가진 모의 신청만으로도 호적을 변경할 수 있었을 것임으로 호적법을 개정하는데, 특단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바 자의 본인호적에의 전적에 관한 입법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호주제의 위헌문제와 연계하여서 호주제의 위헌을 이유로 한 가족법(호적법)의 전면 해체를 유도한 것은 법 논리상 합당하지 아니하다. 요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바라는 것은, 호주제의 위헌을 이유로 한 가족과 호적제도의 전면적 해체가 아니라 적절한 입법을 통한 양육대상인 자의 본인호적에의 입적을 협력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족과 공동으로 호적에 입적되어 함께 살기를 바라지 누구도 호적에 입적을 거부한다고 하여서 호적제도의 전면적 해체를 바라는 바는 아니다. 따라서 자의 입적에 관한 호주의 호적법상의 협력거부를 이유로 하여, 호주와 가족에 관한 민법의 포괄적 규정인 제778조(호주의 정의) 및 제779조(가족의 범위)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호적의 전적신고 절차에 관한 호적법 제114조 제1항은 호주제의 본질적 규정이 아니라, 호주와 가족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 기술적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절차에 관한 규정이 불합당하다고 하여, 이것이 민법 제778조의 호주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자가 부의가에 입적하여 있고 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 때문이라고(제781조 제1항)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모의가에 입적하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고 규정을 두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민법상 가족제도는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계승의 원칙이 타성혼의 원칙(동성동본(동족)금혼의 원칙) 및 가족공동체의 원칙과 함께

한국가족제도의 3대원칙으로 정착되어 왔으므로 이는 가족법에 확립된 전통문화인 동시에 민족적 결속을 형성하여온 민족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계계승의 원칙은 부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또한 모계의 계승의 여지를 두고 이어져 왔었다.

따라서 민법 제778조는 가족공동체의 기록공부인 호적상의 대표명의자로서 호주를 가계계승의 원칙과 더불어 규정한 것일 뿐이며, 호주의 정의(제778조)조항에서는 가족공동체가 가계계승에 의하여 구성될 수도 있고, 또는 분가나 기타 일가 창립으로 창설될 수 있으며 그 가의 대표가 호주가 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민법 제778조는 호주제를 규정한 추상적 원리규정이므로 그 구체적 입법내용은 관련된 실행적 입법에 의하여 결정될 일이며, 이는 구체적인 입법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도는 호적의 대표를 규정한 것이며 가부장을 규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음으로 제781조 제1항에서 자는 부의가에 입적하면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제826조 제3항에서 처는 부의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부가 처의가에 입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자가 모의가에 입적할 수 있고 또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826조 제3항과 제4항의 처의 입적과 부의 입적에 관한 규정은 입법체제상 제78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제2항으로 조문의 위치가 옮겨져야 마땅할 것인바, 초기 입법과정의 착오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778조의 호주의 규정이나 제781조 제1항의 자의 성, 본과 자의 부가 입적의 규정이 필연적으로 자의 모가에의 전적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따라서 이를 헌법이 규정하는 양성평등의 위반인 위헌규정으로서는 볼 수 없다.

이 사안에서 신청인의 자의 이적 신고를 거절한 관할 호적관청은 민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호적법 제114조(전적신고)에 근거하여 이를 호주의 권한과 임무로 규정하는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조문은 제1항에서 「전적하려는 때에는 신분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호적법 제114조 제1항, 본문은 1960년의 제정 당시의 문안이다. 그 후로 호적법은 12번씩이나 개정되었으면서도 그리고 90년 이후로 6번이나 개정되었으면서도 이 가족법 개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친여성적 개정론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혼모의 보호자녀의 이적에 관한 조항을 하나만 개정하면 될 것을 호적법 제11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다가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와 제781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공격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법 제778조의 호주제는 전통가족 공동체가 삼국시대 이래로 존립하여 왔고 그 공적 가족 명부가 호적으로 설치되고 계승되어 왔음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이는 가족의 대표명의일 뿐이며 제778조의 어디에도 가부장적, 양성 불평등적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환언하면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도 분가한자와 단독 일가 창립한자와 또는 복가한 자와 더불어 그 호적의 대표명의를 가진 호주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요약컨대 이 사안에서 미혼모의 보호자녀 이적 신청이 거부된 것은 민법 제778조(호주제)나 제781조(자의 부가 입적) 및 제826조 제3항(처의 부가 입적)등의 입적의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호적법 제114조(전적신고)의 호주신고원칙의 의도적 방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혼 후의 피보호자의 모에 의한 전적신고에 관한 조문을(예컨대 제114조 제3항 신설) 하나 신설하면 될 것을 의도적으로 이를 헌법소송으로 확대하여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입법능력의 자율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의 관련공직자들

이 법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오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 수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

(2) 2001.헌 가.11 내지 15, 2004 헌 가 5 사건(부와 처가 호주변경 신청을 통한 호주명의의 삭제를 신청한 사안)(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은 현재가 발표한 요약문에 의하면 이 사건의 신청인들은 모두가 혼인하여 각기 그 배우자와 가를 이루고, 그들 중 부가 호주로 되어 있는 이들인 바, 그들 중 호주인 부가 신청인이거나(2001.헌 가.11.14. 2004.헌가5 사건) 또는 호주인 부의 처가 신청인이다.(2001.헌 가.12.13.15 사건) 이들은 부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를 호주가 없는 무호주의 가로 바꾸기 위하여 각기 관할 호적 관청에 호주 변경 신고를 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민법 제778조, 제826조 제3항 본문(처의 부가 입적)이 위헌이라고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제778조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① 이 사안을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관할호적관청에 대한 호주 변경신고가 어떠한 법규의 근거로 행하여 졌는지 현재의 발표문안 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추측컨대 이는 호적법의 호주 승계조항이나 호적정정조항을 유추적용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지금까지 이러한 호적 변경신고에 대한 입법대비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 신청인들도 법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호주제 위헌론의 실천전술로서 고안된 소송기술이며 민법의 가족법제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어려움을 주려는 치밀한 소송을 위한 소송의 사례라고 생각된다.

② 그러나 민법 제778조는 제779조와 더불어 호주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가족이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그 대표로 호주가 가족공동체의 가족공부상의 기준인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778조는 호주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통을 계승하거나, 분가에 의하거나 일가를 창립하거나 패가를 부흥하는 등의 가를 구성하고 그 가의 공부(호적)상의 대표가 되는 지위이다.

민법 제778조는 제779조와 더불어 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그 이 구성된 가가 단독가정(단독호주)이건 편친가족이건 핵가족이건 대가족이건 간에 구성된 가는 잠재적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사회적 준거집단이며, 마을 등의 지연공동체와 더불어 사회적 안정장치이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정책을 통하여 혼인과 가정을 사회의 안정조직의 기초로 삼고 이를 보호하고 또한 법제도로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과 가족제도는 특히 인류문화와 인간의 윤리적 가치체계와 화합의 전통을 통하여 가장 귀중한 가치를 함축한 전통문화와 민족공동체적 가치의식의 기초를 이루어왔다.

그러므로 특히 한국의 가족법에 있어서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규정이야말로 전형적인 가족질서에 관한 강행법규이다. 오랫동안 이의 없이 지켜져 왔던 강행법규를 신고인들의 임의적 신고에 의하여 가족공동체의 대표가 없는 가족제도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법규의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호주제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무수한 침략 속에서 민족의식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결속과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회적 문화적 정신재산인 이러한 공동체적 결속을 파괴하려는 개인주의는 국민정신 교육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억제되어왔던 것이다.

③ 가족제도와 그 대표인 호주제도는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보장 가운데서 자치단체 등의 공법적 제도보장에 대응하는, 혼인제도와 병존하는 가장 중요한 사법적(私法的) 제도보장이라 할 수 있다. 개인들이 민사법인을 설립하거나, 상사법인인 회사는 설립하더라도 그 구성원은 정관에 따른 단체적 제약을 받게 되며, 법인의 임원의 책임을 맡은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만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예컨대 여행단을 구성해서 여행에 동참하는 자는 임의로 여행단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일이다.

가정에서 혼인에 의하여 부부가 된 사람은 부부로서의 상호간의 구속을 받는 신분관계가 형성된다. 더군다나 출생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서로 간의 의무와 구속은 더욱 강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안에서처럼 호주인 부와 처의 관계에 있는 이들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같은 가족으로 남으면서 또는 부부로 남으면서 호주와 가족관계만 없애려고 하는 호적 변경 소송은 국가가 오랫동안 제도화하고 운영하여 왔던 가족제도에 있어서는 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신청인들은 부부와 가족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호주와의 관계만을 소멸시켜 줄 것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인들이 호주제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지,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체해서 일인일적제를 소망한 것은 결코 아니다.

(3) 헌법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대한 국가책임)와 헌법 제39조 (헌법과 가족생활에 관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국가의 보장)의 조화적 해석

현재는,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되어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선언하고, 호

주제내용을 개관한 다음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화된 사회 환경과 가족상에 비추어도 호주제 존치의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고 선언한다.

이 사안에서처럼 소송을 위한 소송을 통하여 제도를 파괴하려는 행동은 법과 권리에 내재하는 도덕규범의 명백하게 금지하는 바이다. 헌법 제9조가 규정하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대한 국가책임은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는 혼인과 가족생활보호의 원칙과 조화되어서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 되어야 하면서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요컨대 이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간적 가치체제 속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보장되는 혼인과 가족질서의 제도적 보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규범과 연계된 제도이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성과 평등을 근본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전통문화와 민족 문화적 전통과 조화되도록 점진적 개선이 요망되는 일이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적 보장은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는 현재의 추상적 개념만으로서 호주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의 근거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 ① 그 분야를 연구 담당하여 왔던 법관이나 변호사등의 전문가들이 더욱이 이 분야를 국법을 통하여 공무적소임으로 담당하여 오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도의 갈등을 확대시켜서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여서 제도를 혼란시키고 집단적 인기주의(포퓰리즘)에 편승, 선동하여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

키는 등의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다면 이는 공인으로서 소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적지위를 사리에 이용하는 직권남용의 고의적 범죄일 뿐 아니라 국법질서를 혼란시키는 중범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 ② 또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 제37조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한 최소한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법에 내재하는 사적자치의 원리의 제약적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원칙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 ③ 생각컨대 국민의 대다수는 현존하는 호주와 가족제도에 관하여서는 이를 안정된 가족질서로 신뢰하고 있으며, 위헌으로 인식한 사람이 극소수 일 것이며 현재의 해당사건(앞에 제시한 두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가족의 해체와 호적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모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의 본인호적에 입적을 요구한 사안에 관한 소송의 퇴인의 요망은 본인의 호적으로의 입적이지 가족의 호적제도의 전면적 해체가 아니다. 또한 제2사건(호주 없는 호적)에 관한 신청의 의뢰인들은 의도적이긴 하지만 호주의 지위를 삭제해 줄 것을 희망한 것이지 부부간의 호적의 해체를 희망한바 아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들과 당사자를 후원해온 변호인등의 소송의 요지는 양육대상인 자의 입적이거나 또는 호주 없는 호적제도이지, 호주제를 이유로 한 호주제도와 가족제도의 전면적 해체는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행가족제도에 의하여 갖는 가족관계를 친족상속관계 보다 더 밀접한 가족공동체의 가족권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민법 총칙상 통설은 사권의 분류에 있어서의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눈다) 민법은 국민의 생활감정(법의식)에 의하여 정립된 규범체계이며 헌법의 이념적 추상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확일적으로 판단될 수 없는 다원